

헝가리·체코의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법제 분석

김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I 머리말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전자원의 제공국 보다는 이용국에 가까운 입장이면서도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¹⁾에 대한 역대 이행을 위한 법제 마련과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²⁾ 현재 국제적으로는 2019년 8월 7일까지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국은 119개국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인 우리나라의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에 접근·이용하여 이익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상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이행체계에 관하여 숙지해야 하듯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개별 당사국의 ABS 법제에 대한 분석 및 이해가 보다 철저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 메커니즘인 국가책임기관(competent authority),³⁾ 국가연락기관(focal points),⁴⁾ 점검기관(checkpoints),⁵⁾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⁶⁾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⁷⁾ 상업적 이용 및 비상업적 이용,⁸⁾ 금전

1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며,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 제4조 2항은 “이 의정서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기타 특별협정을 포함하여 기타 관련 국제협정을 개발·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 한다. 단, 위 협정들은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상의 상하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신의성실하게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ABS는 ‘출처 공개’ 등과 관련하여 WTO 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과 ‘잠재적 충돌’(potential conflict)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나고야의정서 제4조의 규정 자체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Philippe Sands, Jacqueline Peel, Adriana Fabra and Ruth Mackenzi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 Press, 2012), p.803.

2 EU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박영사, 2018), pp.73-96 참조.

3 나고야의정서 제13조 2항.

4 나고야의정서 제13조 1항.

5 나고야의정서 제17조 1항.

6 나고야의정서 제6조.

7 나고야의정서 제5조.

8 나고야의정서 제8조.

적 이익 공유 및 비금전적 이익 공유⁹⁾ 등 나고야의정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4년 10월 12일 국제적으로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국은 꾸준히 증가하여, 처음에는 유전자원의 '제공국'에 해당되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이용국'의 입장에 해당되는 선진국들의 비준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보다는 이용국에 가까운 입장의 국가이다. 그동안 비준에 따른 혜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이제 나고야의정서의 국제 동향에 따른 국내 법을 제정하여 이용국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들을 강구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살펴볼 헝가리와 체코는 동유럽에 속한 EU 회원국이면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제공국의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에 해당된다.

II 헝가리의 ABS 법제 분석

1.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지정

헝가리는 2011년 6월 23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후, 2014년 4월 29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였고, 2014년 10월 12일 당사국이 되었다.

헝가리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상 ① 넓은 영토에 농업국가인 만큼 국가연락기관으로 농림부(Biodiversity and Gene Conservation Unit, Ministry of Agriculture)를 지정하였고, ② 국가책임기관으로 환경자연보전부 페스트국가정부부(Pest County Government Office, Environmental and Nature Conservation Department)를 지정하였으며, ③ 점검기관으로 ④ 페스트국가정부부(Pest County Government Office), ⑤ 국립연구개발혁신부(National Office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⑥ 헝가리과학원(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⑦ 국립식약처(National Institute of Pharmacy and Nutrition) 등 4개의 기관을 지정하였다.

2.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헝가리는 국토면적의 60% 이상이 경작 가능지로 '농림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토 중 가장 손상된 부분이 농지이기도 하여 환경보전이 절실하기도 하며, EU 서식지지침(Council Directive 92/43/EEC on the Conservation of natural habitats and of wild fauna and flora: Habitats Directive)상의 46개의 멸종위기의 서식지가 헝가리에 존재한다.

헝가리는 2009년 '국가 생태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 NBSAP)을 채택하여 농업, 임업, 수산업, 지역개발, 관광, 토지이용, 수자원 관리, 사냥, 생물학 등 국가환경계획을 실행해 왔다. 이 NBSAP는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을 중심으로 재편되

9 나고야의정서 제5조 4항, 부속서(Annex).

있으며, 이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인식 제고, 교육, 훈련 및 정보 보급이 포함 되어 있다.

무엇보다 헝가리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EU의 ABS 규칙 511/2014/EU 및 2015/1866/EU 를 이행해야 하는 EU 회원국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공표 법률'(헝가리 나고야의정서 공표법, 2014. évi VIII. törvény a Biológiai Sokféleség Egyezményhez kapcsolódó, a genetikai erőforrásokhoz való hozzáférésről, valamint a hasznításukból származó hasznok igazságos és méltányos megosztásáról szóló Nagojai Jegyzőkönyv kihirdetéséről (Act VIII of 2014 on the public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2014년에 제정하였다.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국제적 및 EU법적 이행규칙에 관한 정부 규정 3/2016'(헝가리 나고야의정 서 ABS 이행법률, 3/2016. (I. 20.) Korm. rendelet a genetikai erőforrásokhoz való hozzáféréssel és a hasznításukból származó hasznok igazságos és méltányos megosztásával kapcsolatos nemzetközi és európai közösségi jogi aktusok végrehajtásának egyes szabályairól (Regulation 3/2016 (I. 20.) of the Government on the rules of implementation of certa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 in relation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을 제정하였다.

표 11 헝가리 ABS 법의 구조

구분	조문 번호	조문 제목
1. 법령의 범위	제1조	법령 적용 범위
2. 추진 정부기관	제2조	국가연락기관
	제3조	국가책임기관
	제4조	국가연락기관의 기능
	제5조	점검기관의 기능
3. 신고의무	제6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 관련 연구비 신청 시 신고의무
4. 정보제공	제7조	ABS 담당기관 간 정보 제공
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법적 조치	제8조	행정 조치
	제9조	벌칙
6. 최종규정	제10조	발효

3. PIC 관련 내용

헝가리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ABS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PIC)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면서도,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헝가리 ABS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나고야의정서 및 EU ABS 규칙의 이행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인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주요 기관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헝가리 ABS법 제6조는 EU ABS 규칙 511/2014/EU¹⁰⁾ 제4조상의 이용자의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위한 규정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에 따라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연구자금지원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¹¹⁾ 한편 점검기관은 제7조에 따라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요청이나 통지를 국가책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¹²⁾ 그리고 제8조 1항에 의하면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연구자인 이용자가 제6조 1항상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연구재원이 지원되지 않는다.¹³⁾ 또한 제8조 2항에 의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품의 유통이 허가되지 아니한다.¹⁴⁾ 제9조에 따라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10만 포린트(100,000 Forints)의 벌금이 부과된다.¹⁵⁾ 이와 같은 내용은 EU ABS 규칙 511/2014/EU 및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¹⁶⁾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해당된다.

4. MAT 관련 내용

헝가리 ABS법은 PIC 및 일련의 관련이 있는 규정은 존재하나, MAT과 관련된 규정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MAT과 관련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EU ABS 규칙 511/2014/EU 및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관련 ABS 법제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접근'하고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점검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외 유전자원을 헝가리 국내에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국의 PIC이나 MAT에 관한 ABS 법제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10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tilization in the Union (OJ 2014 L150/59).

11 헝가리 ABS법, 제6조.

12 헝가리 ABS법, 제7조.

13 헝가리 ABS법, 제8조 1항.

14 헝가리 ABS법, 제8조 2항.

15 헝가리 ABS법, 제9조.

16 Regulation 2015/1866/EU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OJ 2015 L275/4~19).

III 체코의 ABS 법제 분석

1.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지정

체코는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6월 23일 서명한 후, 2016년 5월 6일 비준하였으며, 2016년 8월 4일 국내적으로 발효됨으로서 당사국이 되었다.

체코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상 ①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를 지정하였고, ② 국가책임기관으로 또한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하였으며, ③ 국가점검기관으로 또한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2.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체코는 기본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 EU ABS 법(EU규칙 511/2014, 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 위원회 나고야의정서 가이던스(안내서)을 준수함과 동시에, 2018년 5월 17일 체코내 국내이행법인 체코 ABS법(나고야의정서 하의 유전자원 이용 조건에 관한 법률, o podmínkách využití genetických zdrojů podle Nagojského protokolu, Act No 93/2018 Coll. on conditions of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under the Nagoya Protocol, Czech Republic)을 채택하였다.

표 11 체코 ABS법 2018의 구조

조문 번호	조문 제목
제1조	주제
제2조	등록부에 일부 또는 전부의 등록
제3조	신고 및 추가증거
제4조	수집품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점검
제5조	이용자 이행의무준수에 관한 점검
제6조	환경부
제7조	검사관
제8조	구제조치
제9조	범죄
제10조	효력

3. PIC 관련 내용

체코 의회(Parliament)는 2018년 5월 17일 체코 ABS 법을 채택하였다. 동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EU의 법적 행위들¹⁷⁾과 관련하여,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조건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에 관한 이행의무준수(compliance)에 관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 및 행정당국의 범위를 규율한다”¹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U 등록부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여 등록

체코 ABS법 제2조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칙 511/2014/EU의 제5(2)조에 언급된 요청사항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¹⁹⁾ EU ABS 규칙 제5(2)조는 유전자원 보유자가 유전자원 수집등록처에 해당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절차가 개시된 후 ‘90 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²⁰⁾ 환경부는 체코 환경 검사관(Environmental Inspectorate)에게 EU 내 수집등록처²¹⁾에 전부²²⁾ 또는 그 일부를 지체 없이 등록하도록 통보해야 한다.²³⁾ 한편, 소장품보유자는 집행위원회 이행 규칙 2015/1866/EU 제3(1)조에 언급된 변경 사항을 환경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²⁴⁾

2) 신고 및 추가 증거의 제출

체코 ABS법 제3조는 EU 규칙 511/2014/EU 제7(1 또는 2)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²⁵⁾ 이용자는 연구단계 또는 최종제품개발단계에서 이행의무준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EU 규칙 511/2014/EU 제7(2)조에 따른 추가 증거는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정한 일정 내에 환경부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²⁶⁾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환경부가 추가 증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련 당사자인 이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7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1866/EU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regarding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of compliance by users and best practices.

18 체코 ABS법, 제1조.

19 체코 ABS법, 제2조 1항.

20 체코 ABS법, 제2조 2항.

21 EU 규칙 511/2014/EU, 제5조 (1), (2).

22 EU 규칙 511/2014/EU, 제3조 (9).

23 체코 ABS법, 제2조 3항.

24 체코 ABS법, 제2조 4항.

25 체코 ABS법, 제3조 1항.

26 체코 ABS법, 제3조 2항.

3) 수집물 등록 및 이용자 이행의무준수에 대한 점검

A. 수집물 등록에 대한 점검: 수집품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점검

체코 ABS법 제4조는 등록처에 포함된 수집물(소장품) 또는 수집물의 일부가 등록 후 등록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²⁷⁾ 일반적으로 '수집물'(소장품)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서(annual plan of checks on collections)²⁸⁾를 기초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²⁹⁾ 그리고 수집물 또는 그 일부가 등록처에 포함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환경부는 등록처에 포함된 수집물 또는 그 일부의 보유자에게 구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³⁰⁾ 또한 유전자원의 소장품보유자는 구제 조치의 이행을 지체 없이 환경부에 통보해야 하며, 만약 수집물보유자가 적절하게 부과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수집물 또는 그 일부를 등록처에서 삭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환경부는 검사관에게 이에 관하여 통보해야 한다.³¹⁾

B. 이용자 이행의무준수에 대한 점검: 이용자 이행의무준수에 관한 점검

체코 ABS법 제5조는 이용자가 EU 규칙 511/2014/EU 상에 규정된 의무 및 본 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에게 대한 연간 점검 계획서(annual plan of checks on users)³²⁾를 기초로 수행된다.³³⁾

4) 환경부의 권한 및 역할

체코 ABS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는 ① 등록부에 수집물 또는 그 일부를 포함(등록)시킬지 여부 및 그 삭제 여부를 결정하며, ② EU 규칙 511/2014/EU 제7조 1항과 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고, ③ 수집물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서 및 이용자에게 대한 연간 점검 계획서를 발행하며, ④ 본 법 하에서 구제 조치를 부과한다. 그리고 ⑤ 본 법 하에서 위반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⑥ 본 법 하에서 검사관이 내린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며, ⑦ 본 법에 의해 검사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제외하고는, EU 규칙 511/2014/EU 및 집행위원회 이행 규칙 2015/1866/EU의 이행을 담당하는 국가책임기관³⁴⁾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³⁵⁾

27 EU 규칙 511/2014/EU, 제5조 (3).

28 EU 규칙 511/2014/EU, 제5조 (4); EU 규칙 2015/1866/EU, 제4조 (1).

29 체코 ABS법, 제4조 1항.

30 체코 ABS법, 제4조 2항; EU 규칙 511/2014/EU, 제5조 (4); EU 규칙 2015/1866/EU, 제4조 (5).

31 체코 ABS법, 제4조 3항.

32 EU 규칙 511/2014/EU, 제9조 (1), (3).

33 체코 ABS법, 제5조.

34 EU 규칙 511/2014/EU, 제6조 (1).

35 체코 ABS법, 제6조 a)-g).

5) 검사관의 권한 및 역할

체코 ABS법 제7조에 따라 검사관은 ① 수집물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서 및 이용자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서 준비에 있어 환경부와 협력하고, ② 등록처에 포함(등록)된 수집물 또는 그 일부가 등록처에 포함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이용자가 EU 규칙 511/2014/EU에 규정된 의무 및 본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그리고 ③ 본 법 하에서 구제 조치(개선 조치, 시정 조치)를 부과하며, ④ 본 법 하에서 위반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⑤ 실시된 점검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환경부에 통보하고, 구제 조치 및 벌칙을 부과한다. 또한 ⑥ 본 법이 환경부에 위임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EU 규칙 511/2014/EU 및 집행위원회 이행 규칙 2015/1866/EU 하에서 소관 관할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³⁶⁾

6) 구제 조치

체코 ABS법 제8조에 따라 ① 환경부는 등록처에 포함되는 수집물 또는 그 일부의 보유자에게, 등록처에 포함시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보장하도록 명령(order)할 수 있고, 그리고 기준을 충족하기 전 유전자원이 제공된 이용자에게 해당 수집물 또는 그 일부가 등록처에 포함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³⁷⁾ 그리고 ② 검사관은 EU 규칙 511/2014/EU 제4조 또는 제7조 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검사관이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이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³⁸⁾

7) 범죄의 처벌

체코 ABS법 제9조에 따라 ① 자연인, 법인 또는 자연인-기업가(natural person-entrepreneur)가 이용자의 능력을 위반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즉, ㉑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511/2014/EU 제4(1)조 하의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㉒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511/2014/EU 제4(3)조 상 후속적 이용자에게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찾고 유지하고 이전하는 것을 실패한 경우, ㉓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511/2014/EU 제4(5)조 하에서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511/2014/EU 제4(6)조에 따른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㉕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511/2014/EU 제4(8)조에 위배되어, 이용을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㉖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511/2014/EU 제7(1 또는 2)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511/2014/EU 제7(2)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³⁹⁾가 이에 해당된다.

36 체코 ABS법, 제7조 a)-f).

37 체코 ABS법, 제8조 1항.

38 체코 ABS법, 제8조 2항.

39 체코 ABS법, 제9조 1항 a)-f).

그리고 자연인, 법인 또는 자연인-기업가가 집행위원회 이행 규칙 2015/1866/EU 제3(1)조에 언급된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등록처에 포함(등록)된 수집물 또는 그 일부의 소유자의 능력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된다.⁴⁰⁾ 벌금은 다음의 양만큼 부과될 수 있다. 즉 ㉠ 제9조 1항 (a)~(e) 또는 2항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는 CZK 50,000, ㉡ 제9조 1항 (f)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는 CZK 20,000를 부과할 수 있다.⁴¹⁾ 한편, 본 법 하의 범죄 소송절차는 환경부가 수행해야하는 제9조 2항 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관이 수행한다.⁴²⁾ 그리고 본 법 하에 부과된 벌금은 체코공화국의 국가환경기금(State Environmental Fund)의 예산 소득을 형성한다.⁴³⁾

4. MAT 관련 내용

체코 ABS법을 보면 주로 유전자원등에 대한 수집등록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집등록, 신고, 점검, 검사, 구제조치, 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의무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결국 PIC 절차준수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MAT을 보장하는 입법태도라고 볼 수 있다. 체코 ABS법이 MAT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체코가 MAT체결을 비의무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MAT은 본질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및 EU ABS 규칙상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EU의 나고야의정서 역내 이행을 위한 규칙 511/2014/EU를 보면, EU가 유럽의회(EP)의 수정안에서 재고된 상당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EU가 유전자원의 제공국 입장 보다는 이용국 입장을 좀 더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헝가리와 체코는 제공국 입장의 동유럽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PIC을 중심으로 규율하면서 MAT은 당연히 귀결되는 것으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헝가리는 농업국가로서 국가연락기관인 농림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손상된 농지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된 환경자연보전부의 환경보전의 역할도 중요하다. 헝가리 ABS법은 PIC과 관해서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거버넌스체계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적절주의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용자의 '연구자금지원신청서'의 국가책임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연구재원의 비지원과 해당 제품의 유통 금지를 규정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MAT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

40 체코 ABS법, 제9조 2항.

41 체코 ABS법, 제9조 3항.

42 체코 ABS법, 제9조 4항.

43 체코 ABS법, 제9조 5항.

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헝가리 ABS법이 MAT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MAT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나고야의정서와 EU ABS 규칙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기본적인 의무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코는 환경부를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단일화하여 복잡성을 일면 제거하고, 서류등 관련 업무가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코 ABS법은 PIC과 관련해서는 제2조에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수집등록의 주된 업무를 환경검사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제3조에서 연구단계 또는 최종제품개발단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제4조와 제6조는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각각 수집물등록에 대한 점검 및 이용자 이행의무준수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환경부와 환경검사관의 협력하에 수행되는 여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9조에서는 세세히 벌칙을 규정하여 해당 벌금을 체코 국가환경기금으로 수용해 활용하는 등 제공국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코의 ABS법도 MAT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것이 MAT체결의 비의무는 아니며, MAT은 본질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및 EU ABS 규칙상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제공국에 가까운 국가들은 PIC 관련 내용을 이용국 입장의 국가보다 상세히 규정하거나 강조하고 있으며 MAT의 체결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박영사, 2018.

3/2016. (I. 20.) Korm. rendelet a genetikai erőforrásokhoz való hozzáféréssel és a hasznosításukból származó hasznok igazságos és méltányos megosztásával kapcsolatos nemzetközi és európai közösségi jogi aktusok végrehajtásának egyes szabályairól, Hungary (Regulation 3/2016 (I. 20.) of the Government on the rules of implementation of certa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 in relation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Hungary).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odminkach využívání genetických zdrojů podle Nagojského protokolu (Act No 93/2018 Coll. on conditions of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under the Nagoya Protocol, 2018, Czech Republic).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tilization in the Union (OJ 2014 L150/59).

Regulation 2015/1866/EU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OJ 2015 L275/4-19).

Philippe Sands, Jacqueline Peel, Adriana Fabra and Ruth Mackenzi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 Press, 2012.